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(허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226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8. 20.

발 의 자 : 허영·박선원·박정
박상혁·위성곤·정진욱
이수진·박균택·김태선
황희·장경태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.

그러나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

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지요원을 보호하려는
것임(안 제31조의7, 제95조제3항제1호의2 신설).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7(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 ① 복무기관의 장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등 복무기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민원인 등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폭언등”이라 한다)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95조제3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31조의7제2항·제3항을 위반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1조의7(민원인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)</u> <u>① 복무기관의 장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 등 복무기관 소속 직원 외의 사람을 주로 상대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민원인 등의 폭언, 폭행,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(이하 이 조에서 “폭언등”이라 한다)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복무기관의 장은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인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사회복무요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, 휴가 명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

제95조(과태료) ① . ② (생략)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1. (생략) <u><신 설></u> 2. (생략) ④ ~ ⑦ (생략)	<u>③ 사회복지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,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요원의 요구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 제95조(과태료) ① .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u>1의2. 제31조의7제2항 · 제3항을 위반한 자</u> 2. (현행과 같음) ④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